

서울특별시 금천일자리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2월 1일  
행정재경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년 11월 10일, 고성미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2년 11월 1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40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2년 12월 1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고성미 의원)

### 가. 제안이유

- 임원의 책임사항과 재정 지원의 제한사항을 명확히 하고, 독립된 감사인에 의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여 금천일자리주식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해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임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8조 신설)
- 재정 지원의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제2항 신설)
- 외부감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 신설)
- 다른 법령의 준용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신설)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 나.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 대표이사 및 임원에 대해 책임사항과 재정 지원의 제한사항을 명확히 하고 금천일자리 주식회사가 금천구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금천구에 보고하도록 하는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동 조례 개정을 통해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 대해서 외부회계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금천일자리주식회사의 재무건전성 향상 및 재정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동 개정안에 대해 소관부서인 일자리청년과에서는 법률자문을 통해 “법률의 위임 없이 금천일자리주식회사에게 강행규정으로 외부회계 감사를 받게 하는 것은 금천일자리주식회사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1)에 정한 외부감사 대상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지방자치법 제 28조제1항2) 단서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크므로 임의규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1)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2) 「과건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과건근로자

2)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반면 동 개정안에 대한 금천구의회 입법법률 자문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 동법 제2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률상 주민(법인 포함)에 대한 의무부과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법령에 다른 금지 규정이 없다면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집행부의 법률자문과는 상충된 의견이 제출되었음.
- 이에 본 조례개정안이 법률유보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다소 있는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